



계란등급제

계란등급제도의 시행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3월 14일 (주)농협유통 대강당에서 '계란등급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중 계란등급제와 관련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과 계란등급판정 기준(안) 등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계란등급제의 추진배경

우리축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유통단계에서의 규격화, 표준화 및 기계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볼 때 유통단계에서의 경쟁력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란은 아직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격화된 포장으로 유통되는 비율도 낮은 실정 이므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는 계란에 대한 중량등급과 품질등급을 제도화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행상의 중량규격에 의해서만 유통되고 표준화와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계란등급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계란등급제의 기대효과

- 계란의 외관검사 뿐만 아니라 투광검사 및 활란검사를 통해 내부품질까지 검사하게 되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유통·소비체계의 확립이 가능해진다.
- 계란의 품질에 따라 적정가격을 수취하게 됨으로써 생산농가에게는 소득향상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계란의 산란양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의 난각에 등급판정일자를 표시하고, 포장용기에 중량규격과 품질등급표시를 하게됨으로써 소비자에게 계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닭·계란등급제관련 요지

□ 개정요지

닭고기와 계란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닭의 도체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도축장 경영자를 경유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 제출
- 계란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란등급판정신청서를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계란등급판정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제출하고, 경영자는 신청서를 등급판정사에게 제출
- 닭과 계란의 등급판정서확인서 발급은 난각 또는 포장용기 표시사항으로 같은
- 닭고기등급판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계란등급판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등급판정 대상축산물 · 판정방법 · 기준 및 적용조건(닭고기, 계란)

1. 대상축산물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하여 검사에 합격하고, 신청인이 등급판정을 받고자 자율적으로 신청한 닭도체
- 신청인이 등급판정을 받고자 자율적으로 신청한 계란

2. 판정방법

- 닭은 도계한 상태에서 판정한다.
- 계란
 - 계란의 품질등급은 출하자별 등급판정 신청물량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표본에 대한 등급판정결과를 신청물량 전체에 부여한다.
 - 품질등급 판정을 위한 표본추출세부방식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등급판정기준

- 닭
 - 중량규격 : 닭도체의 중량에 따라 구분한다.
 - 품질등급 : 닭도체의 외관, 살붙임, 지방부착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 계란
 - 중량규격 : 계란의 중량에 따라 구분한다.
 - 품질등급 : 계란의 겉모양, 기실의 크기, 난황·난백의 상태 등에 따라 판정한다.
 - * 닭도체, 계란 기타 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등급판정 적용조건

- 닭도체 등급판정은 온도체 판정방법을 적용한다.
- 계란등급판정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지정한 계란집하장에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햇빛이 차단되고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조명밝기는 220룩스 이상이고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 계란을 낱개로,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선별기
- 계란의 내외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
- 계란의 외부에 생산된 농장명, 등급판정 일자 또는 포장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시설
- 계란을 단위별로 포장할 수 있는 시설

계란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란의 등급판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등급판정을 공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황"이라 함은 계란 중심부의 노란 부위를 말한다.
2. "난백"이라 함은 난황을 둘러싸고 있는 흰부위를 말하며 농후난백과 수양난백으로 구분한다.
3. "농후난백"이라 함은 계란의 흰자위 중 노른자위를 견고히 둘러 싸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4. "수양난백"이라 함은 계란의 흰자위 중 농후난백을 둘러 싸고 있는 얇고 넓게 퍼져있는 부분을 말한다.
5. "투광검사"라 함은 빛을 이용한 투광검사기(Candler)를 통해 난각의 상태, 기실의 깊이, 난백과 난황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호우단위(Haugh Units)"라 함은 계란의 무게와 농후난백의 높이를 측정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text{호우단위} = 100 \cdot \log(H + 7.57 - 1.7W^{0.37})$$

H : 난백높이(mm)

W : 난중(g)

7. "기실"이라 함은 계란 둔단부 난각막 사이의 공기층을 말한다.

제3조(등급판정 시행사업장 신청 등) ① 계란등급판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집하장의 대표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별표5제4항라목의 시설 조건을 구비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하 "등급판정소장"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등급판정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축산물등급판정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량규격) 계란의 중량규격은 낱개마다 계란의 무게를 자동칭량기를 이용하여 선별한 후 무게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 규격으로 구분한다.

〈계란의 중량규격〉

규격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계란의 무게	68g 이상	68g 미만	60g 미만	52g 미만	44g 미만
		60g 이상	52g 이상	44g 이상	

제5조(등급 판정기준) ① 계란의 등급은 신청된 계란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되,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크기	표본 추출율	할란검사 표본수
3,000개 미만	7%	15개 내외
3,000이상 15,000미만	5%	20개 내외
15,000이상 30,000미만	3%	25개 내외
30,000개 이상	2%	30개 내외

- ② 표본추출된 계란의 등급판정을 위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외관검사·내부검사와 할란검사를 실시하고 3가지 검사결과 중 가장 낮은 급수가 등급판정기준이 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판정된 표본계란의 품질평가기준 급수 구성 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등급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포장용기의 규격) ① 계란의 유통용 포장용기의 규격은 별표3에 의한 용기의 적용을 권장한다.
 ② 계란의 운송용 포장용기의 크기는 별표4의 규격으로 포장하도록 권장한다.

- 제7조(등급판정 일자 및 등급표시 등) ① 축산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여 각 계란의 난각에 등급판정 일자를 표시한다.
- ② 계란등급판정시행사업장의 경영자는 등급판정한 계란에 대해 축산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등급 및 중량규격과 다음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시행사업장 명칭·주소 및 등급판정 일자
 2. 등급판정사 성명
 3. 보관방법과 권장 유통기간

제8조(등급표시사항 등에 관한 관리) ① 등급판정소장은 난각에 표시하는 등급판정 일자 및 포장용기에 표시된 등급이 내용물의 품질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등급판정소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계란등급판정시행사업장의 경영자가 계란의 난각에 날인하는 등급판정일자와 포장용기상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등급판정을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문의 별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으며, 공청회 자료의 전문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